

## 기초융합교육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

(제정 2017. 8. 18.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기초융합교육원 교원인사위원회 (이하 “인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비 심의한다.

1. 신입 교수 초빙에 관한 사항
2. 객원교수, 겸임교수 등의 초빙에 관한 사항
3. 교원 연구년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
4. 교원 승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3조(조직)**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원장이 추천하는 5~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,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4조(위원장의 직무)**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**제5조(회의)** ① 회의는 본부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,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회의록 작성)**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.

**제7조(간사)**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기초융합교육원 행정지원실장이 간사가 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